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220호(號) 1913(大正 2)년 4월 28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25호(號)

1913(大正 2)년 5월 1일부터 철도원(鐵道院), 조선총독부 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 남만주 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와 러시아의용함 대기선(露國御用艦隊汽船), 러시아동청철도(露國東淸鐵道)와 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간(間)에서, 하기[左記] 규칙(規則)에 의거하여 여객(旅客) 및 수하물(手荷物)의 연락운수(聯絡運輸)<sup>1)</sup>를 개시(開始)한다.

1913(大正 2)년 4월 28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백작(伯爵)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일본·만주 연락운수 여객 및 수하물 임률규칙[日滿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貨率規則]

제1편(編) 임률적용규칙(貨率適用規則)

갑(甲) 총칙(總則)

제1조(條)

·임률표(貨率表)에 기재(記載)된 각(各) 역(驛)·항(港) 간(間)의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運送)은 이하 기재하는 특별규칙(特別規則)에 의거하여 이것을 시행한다. 단, 본(本) 규칙에 특별규정(特別規定)이 없는 경우는 아래[下]의 규정(規定)에 의거한다.

(가) 일본 국유철도(日本國有鐵道)의 구역 내(內), 곧,

① 철도원(鐵道院) 소관(所管) 철도에서는 철도영업법(鐵道營業法) 및 철도운송(鐵道運送)에 관한 제규칙(諸規則)에 의거한다.

② 조선총독부 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 소관(所管) 철도에서는 동(同)철도에 시행되는 법령(法令)에 의거한다.

(나)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 구역(區域) 내(內)에서는 동(同)철도의 여객 및 수하물 운송규정[旅客及手荷物運送規程]에 의거한다.

(다) 러시아의용함대(露國御用艦隊) 및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에서는 동(同)기선의 제규칙(諸規則)에 의거한다.

(라) 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구역 내에서는 러시아(露國) 각(各) 철도의 일반법령 및 부속 제규칙[一般法令及附屬諸規則]에 의거한다.

(마) 동청철도(東淸鐵道) 구역 내에서는 동(同)철도의 여객·수하물 및 화물 운송규칙[旅客手荷物及貨物運送規則]에 의거한다.

제2조

·본(本) 규칙(規則) 부속(附屬) 임률표(貨率表)에서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임은 그 운송 전체 거리에 대한 것을 나타낸다. 동청(東淸) 및 우수리(烏蘇里[Ussuri]) 양(兩) 철도 각(各)

1) 역차 : 두 개 이상의 運輸 기관에 걸쳐 시행되는 운수.

역(驛)에서 일본행(日本行)의 것은 「루블[留·RUB]」로 계산하고, 일본에서 동청(東淸)·우수리(烏蘇里[Ussuri]) 양(兩) 철도 각 역행(驛行)의 것은 「엔(圓)」으로 계산한다.

제3조

·본(本) 규칙(規則)의 실시변경(實施變更) 및 증보(增補)에 관한 고시(告示)는 일본[日]·만주[滿] 교통사무관리자(交通事務管理者)의 청구(請求)에 의거하여 각(各) 관계 운송업자(運送業者)가 하기[左記] 지면(紙上)에 이것을 게재(掲載)한다.

일(一), 철도원(鐵道院) 및 조선철도(朝鮮鐵道)는 「관보(官報)」

일(一),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는 「만주일일신문(滿洲日新新聞)」

일(一),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sup>2)</sup>는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일(一), 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및 의용함대(義勇艦隊)는 「러시아 각 철도임률규칙집(露國各鐵道貨率規則集)」

일(一), 동청철도(東淸鐵道)는 「하얼빈웨스트닉(哈爾濱Westnic)」

을(乙) 특별규칙(特別規則)

제1 여객운송(旅客運送)

시각표(時刻表)

제4조

·여객운송은 본(本) 교통(交通)의 각(各) 역(驛)·항(港)에 정시(定時)에 게시(揭示)하는 철도(鐵道) 및 기선(汽船) 시각표에 의해 이것을 시행한다.

승차·선권(乘車船券)

제5조

1. 본(本) 연락운수(聯絡運輸)를 위해 발매(發賣)하는 승차·선권(乘車船券)은 모두 책자형(冊子形)에 의거한다.

2.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각(各) 등급의 색(色) 구분은 아래[左]와 같다.

1등(一等) 황색(黃色)

2등(二等) 녹색(綠色)

3등(三等) 갈색(褐色)

3.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는 그 표지(表紙) 및 각 장(葉)에 압출인(押出印)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발매(發賣)하는 철도명(鐵道名) 또는 기선회사명(汽船會社名)이 날인(捺印)된 것을 요(要)한다.

4.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편철(編綴)해야 하는 각 구간(區間)의 승차·선권(乘車船券)은 규정양식(規定樣式)에 의거하여 이것을 제작(調製)한다.

2) 역차 : 원문에는 '會'가 '書'로 誤記되어 있다.

5.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는 기호(記號), 번호(番號), 출발[發]·도착[著] 역(驛)·항(港) 명(名), 등급(等級), 경유선로(經由線路), 임금(賃金), 유효기간(有效期間) 및 운임규칙[賃率規則]의 적요(摘要)를 일본[日]·러시아[露]·영국[英]의 3개(三箇) 국어(國語)로 이것을 인쇄해야 한다.

승차·선권(乘車船券)의 효력(效力)  
제6조

- ①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는 급행열차(急行列車) 및 보통열차(普通列車)에 대하여 발매(發賣)한다. 급행열차(急行列車)의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소지(所持)하는 여객은 시각표(時刻表)에 기재된 모든 여객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  
② 급행열차의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는 1등(等)에 한정(限定)하여 이것을 발매(發賣)한다. 단, 철도원(鐵道院)의 임률표(賃率表)에 특별히 기재된 구간(區間)에서는 보통열차에 대한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소지자(所持者)도 별도(別途)로 급행열차권(急行列車券)을 구입(購入)하여 급행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  
③ 조선철도(朝鮮鐵道) 및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서는, 보통열차의 1등(等)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소지자(所持者)는 별도(別途)로 급행요금을 지불하여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의 급행열차 또는 장춘(長春)·부산(釜山) 간(間) 조선[鮮]·만주[滿] 급행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
- ① 침대(寢臺)를 사용하는 여객은 임률표(賃率表)에 기재된 임금 이외에 별도로 침대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要)한다.  
②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구입(購入)해야 하는 소아(小兒)로서 침대를 사용할 때는 그 요금의 전액(全額)을 지불해야 한다.
- 1등 또는 2등의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소지자(所持者)로서 급행열차권(急行列車券)을 구입(購入)한 자(者)는 특별추가요금(特別追加料金)을 지불하여 만국침대차회사(萬國寢臺車會社)의 침대에 승차할 수 있다.
- ① 동청철도(東淸鐵道),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 및 조선철도(朝鮮鐵道)의 급행열차 혹은 기선(汽船)에서 번호부(番號附) 좌석(座席) 또는 침대(寢臺)를 예약(豫約)하고자 하는 자(者)는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구입 때 이것을 주문(注文)할 수 있다.  
② 위[右]의 주문에 관하여 전보(電報)를 발송(發送)하였을 때는 그 실비(實費)를 여객에게서 징수(徵收)한다.
-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는, 발매(發賣) 역(驛)·항(港)에서 천공기계(穿孔機械)로 발매월일(月日)을 기입(記入)하지 않은 것은 무효(無效)로 한다. 위[右]의 월일은, 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및 동청철도(東淸鐵道)에서는 러시아역(露曆)을 사용하고,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 철도원(鐵道院), 조선철도(朝鮮鐵道)의 각 역(驛) 및 일본(日本)의 항(港)에서는 신력(新曆)을 사용한다. 자정[夜半]에 발차해야 하는 열차에 대하여 발매하는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는 익일부(翌日附) 인(印)을 날인(捺印)한다.
-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유효기간(有效期間)은 35일(日)로 하고, 이것을 당해(當

該) 책자면(冊子面)에 기재한다. 기간은 최종일의 자정[夜半]으로 만료(滿了)한다.

7.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유효기간의 계산에는, 그 발매일(發賣日)은 전일(全日)로 하여 계산한다.

여행(旅行)의 중단(中斷)  
제7조

- ① 여행의 중단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각 권(券)에 기재된, 출발에서 도착까지[終始]의 각(各) 역(驛)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의 중단에 부수(附隨)하는, 역장(驛長)으로부터 어떠한 증명(證明)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② 여객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유효구역(有效區域) 내에서 하기[左記] 각(各) 역(驛)에 하차(下車)하여 여행을 중단할 수 있다.  
· 동청철도(東淸鐵道), 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및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서는 열차 출발·도착 시각표[列車發著時刻表]에 의거하여 정차(停車)하는 각(各) 역(驛)·철도원(鐵道院), 조선철도(朝鮮鐵道)에서는 동(同)시각표 중에 지정(指定)하고 있는 특정(特定) 하차역(下車驛)  
③ 단, 이 경우에 여객은 하차 후(後) 즉시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역장(驛長)에게 제출(提出)하여 상당(相當)하는 증명(證明)을 받아야 한다. 이 수속(手續)을 하지 않을 때는, 하차역(下車驛)에서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기재된 다음 역(驛)까지의 승차권(乘車券)은 그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한다.
- 여행중단(旅行中斷) 후(後)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기재된 유효기간(有效期間) 내(內)에서 재차 여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者)는, 동청철도(東淸鐵道), 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및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의 구역 내(內)에서는 최소(最少) 발차(發車) 10분(分) 이전에 그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매표소(賣票所)에 제출하여 승차해야 하는 열차 번호(番號) 및 월일(月日)의 기입(記入)을 받아야 한다.
-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유효기간 내(內)에서는 여행중단 시간에 제한을 부가(附加)하지 않는다. 여행중단 후(後) 재차 여행을 계속하는 여객은, 번호부(番號附) 좌석 또는 침대의 사용에 대하여는 다시 특별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 및 철도원(鐵道院)의 급행열차와 장춘(長春)·부산(釜山) 간(間) 조선[鮮]·만주[滿] 급행열차에 계속 승차하고자 할 때는 다시 급행열차권(急行列車券)을 구입할 것을 요(要)한다.

소아(小兒)의 승행(乘行)  
제8조

- (가) 만(滿)5세까지의 소아로서 특별히 좌석(座席)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 자(者)는 무임(無賃)으로 한다.  
(나) 만5세부터 만10세까지의 소아 및 특별히 좌석을 사용하는 만5세까지의 소아는 할인(割引)된 소아용(小兒用)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의거하여 이들을 운송(運

送)한다. 이 경우에는 대인용(大人用)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편철(編綴)된 소아용 조사권(調査券)의 오른쪽[右方] 반(半部)을 절단(切斷)하고, 또 동(同)책자의 표지(表紙) 및 승차·선권(乘車船券)의 각 편(片)에 소아「детская」 「child」라는 인장(印章)을 날인(捺印)해야 한다.

(대) 만10세를 초과(超過)하는 소아에 대하여는 할인을 하지 않는다.

- 만5세까지의 소아로서 만국침대차회사(萬國寢臺車會社)의 침대차에 승차하여 특별히 침대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 자(者)는 무임(無賃)으로 한다. 만약 침대를 사용할 때는 소아용(小兒用)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구입하고, 또 만국침대차회사에 대하여 특별추가요금(特別追加料金)의 반액(半額)을 지불해야 한다.

### 우등차(優等車)로의 환승(換乘) 및 보통열차(普通列車)에서 급행열차(急行列車)로의 환승 제9조

·여객은 열등차(劣等車)에서 우등차로 환승 또는 보통열차에서 급행열차로 환승하고자 할 때는 그 철도의 규칙(規則)에 따라 환승역(換乘驛)에서 계산(計算)하여 임금(賃金)의 차액(差額)을 지불해야 한다.

### 승차·선권(乘車船券)의 검사(檢査)

#### 제10조

- 여객은 승행(乘行) 중에 항상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휴대(攜帶)하여 차장(車掌) 또는 열차(列車)나 기선(汽船)에서 검사의 직무(職務)가 있는 계원(係員)의 청구(請求)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시[呈示]해야 한다.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편철(編綴)된 각(各) 권(券)은 각(各) 상당(相當) 구간(區間)에서 열차 또는 기선의 계원(係員)이 이것을 절취(截取)해야 한다. 여객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서 각 권(券)을 직접 절취할 권리(權利)가 없다.
-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서 절취된 승차·선권(乘車船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것을 무효(無效)로 간주하고 수수(收受)한다. 단, 표지(表紙) 및 잔여(殘餘)의 승차·선권(乘車船券)을 보유(保有)하는 책자(冊子)를 제출한 경우는 이 제한(制限)에 있지 않다.
- 여객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검사 때 그 계원(係員)이 이미 통과한 구간(區間)에 대한 승차·선권(乘車船券)만을 절취하도록 주의(注意)해야 한다. 만약 열차 또는 기선의 검사원(檢査員)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승차·선권(乘車船券)을 실수로 절취하였을 때는, 여객은 즉시 그 승차·선권(乘車船券)의 반환(返還)을 청구한다. 동시에 철도(鐵道)에서는 가장 가까운 역(驛)의 역장(驛長), 기선(汽船)에서는 선장(船長)에게 그 취지(趣旨)를 신고(申告)해야 한다.

### 제2 수하물운송(手荷物運送) 수하물(手荷物)의 정의(定義)

### 제11조

- 수하물로서 탁송(託送)할 수 있는 물품(物品)은 여객의 자용품(自用品)으로서 가방[鞆]·밥통[櫃]·여행용 자루[囊]·모자상자(帽子箱子)·상자[箱] 등으로서 포장(包裝)된 것에 한정(限定)한다.
- ① 기타(其他) 하기[左記]의 물품은 여행용품(旅行用品)으로서 수하물로 취급(取扱)하고, 규정중량(規定重量)까지는 무임(無賃)으로 한다.  
(가) 제(諸) 병자(病者) 및 불구자(不具者)가 휴대(攜帶)하는 운동의자(運動椅子) 및 차량부속의자(車輛附屬椅子), 그리고 여객이 동반(同伴)하는 소아용(小兒用) 수레[車]  
(나) 상관원(商館員)이 휴대하는 상품견본(商品見本)으로서 그 포장(包裝) 상태에 의하여 견본인 것을 인정(認定)할 수 있는 물품(物品)  
(다) 상자[箱]에 들어가 있거나 기타(其他) 포장(包裝)이 있는 휴대악기(攜帶樂器)  
(라) 측량기계(測量器械) 및 직공용구(職工用具)  
② 단, 이들 물품[(가)에서 (라)까지 기재(記載)]이 그 수량에 의하여 실제 여객의 자용품(自用品)으로서 상품(商品)이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연소(燃燒)하기 쉬운 물품(物品), 폭발물(爆發物), 강력(強力)한 산화류(酸化類), 유동물(流動物)을 포함하는 하물(荷物), 탄약(彈藥)이 장전(裝填)된 총기(銃器) 및 운송금지품(運送禁制品) 또는 특별조건(特別條件)에 의하여 화물(貨物)로서만 운송하는 물품은 수하물로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
- 금괴(金塊), 은괴(銀塊), 백금괴(白金塊), 지폐(紙幣), 화폐(貨幣), 유가증권(有價證券), 증서류(證書類), 보석(寶石), 진주(珍珠), 기타 고가품(高價品), 미술품(美術品) 예를 들어 회화(繪畵), 미술적(美術的) 주물(鑄物), 골동품(骨董品) 등은 수하물로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

### 수하물(手荷物)의 포장(包裝)

#### 제12조

·철도(鐵道) 또는 기선(汽船) 회사(會社)는 불완전(不完全)한 포장을 한 수하물의 탁송(託送)을 거절(拒絶)할 권리가 있다. 수하물에 이전 첩부(貼付)한 우편(郵便) 또는 철도나 기선 회사의 첩지(帖紙)가 있을 때는 모두 이것을 제거(除去)해야 한다.

### 수하물(手荷物)의 탁송(託送)

#### 제13조

- (가) 수하물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제시[呈示]에 의하여 이것을 접수(接受)하고, 동(同)책자의 표지(表紙)에 기재(記載)되어 있는 도착[著] 역(驛)·항(港) 앞으로 발송한다.  
(나) 수하물은 여행을 중단할 수 있는 중간 역(驛)에서 임률표(賃率表)에 수하물 운임이 정해져있는 역(驛) 앞으로 그 탁송을 접수(接受)할 수 있다.
- 전액(全額)을 지불한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1책(壹冊)마다 그 운송 전체 거리에 대하여 수하물 25「kg」을 무임(無賃)으로 운송한다. 할인(割引)되는 소아(만5세부터 만10세까

지)용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대하여는 수하물 12「kg」을 무임으로 운송한다.

3.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그 중량(重量) 5「kg」마다 임률표(賃率表)에 기재된 운임을 징수한다. 운임 계산 때 중량 5「kg」미만(未滿)의 우수리[端數]는 이것을 5「kg」으로 절상(切上)한다. 또 운임 합계에서 5전(錢) 또는 5코페이카[哥·Kopeck] 미만의 우수리[端數]는 이것을 5전 또는 5코페이카로 절상해야 한다.
4. 수하물의 운임은 탁송(託送) 때 이것을 지불해야 한다.
5. ①탁송을 접수(接受)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를 발행(發行)한다. 수하물증서에는 수하물의 개수(箇數), 중량(重量), 운임(運賃), 출발·도착[發著] 역(驛)·항(港) 명(名)과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등급(等級) 및 번호(番號)를 기입해야 한다.  
②여객은 수하물증서를 수령(受領)할 때, 그 기재사항(記載事項) 각각의 오류(誤謬)의 유무(有無)에 주의(注意)해야 한다.
6. 수하물증서의 발행 월일(月日)은, 철도원(鐵道院), 조선철도(朝鮮鐵道),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 및 기선에서는 신력(新曆)으로 이것을 기입하고, 동청철도(東淸鐵道) 및 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에서는 러시아역(露曆)으로 이것을 기입한다.

휴대수하물(携帶手荷物)

제14조

1. 여객은 휴대에 편리하여 선반에 또는 의자 밑에 두거나 고리[鉤]에 걸 수 있는 소형(小形) 물품을 객차(客車) 내(內)에 휴대할 수 있다. 단, 다른 여객을 방해하지 않고 또 세관(稅關), 세무서[收稅署] 혹은 경찰(警察)의 규칙(規則)에 위반(違反)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限定)한다. 객차 내에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를 발행받지 않은 여객은 직접 이것을 보관(保管)해야 한다. 휴대수하물(携帶手荷物)은 여객이 점(占)한 좌석의 상하(上下)에 한(限)하여 이것을 둘 수 있다.
2. ①운송금지품(運送禁制品), 위험품(危險品) 예를 들면 탄약(彈藥)이 장전(裝填)된 총기(銃器), 연소(燃燒)하기 쉬운 물품(物品), 강력(強力)한 산화류(酸化類), 유동물(流動物) 등 및 그 발산(發散)하는 악취(惡臭) 또는 기타 성질(性質)에 의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不快感)을 주는 물품 및 모든 동물(動物: 새장 안의 작은 새는 제외)은 이것을 객차 내(內)에 휴대할 수 없다.  
②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및 동청철도(東淸鐵道)에서는 여객 1인당(一人當) 3푼트(funt)<sup>3)</sup> 이내의 화약(火藥)을 객차 내에 휴대할 수 있다. 단, 양철(blik)<sup>4)</sup>통[罐] 또는 밀폐(密閉)된 금속제(金屬製) 화약용기(火藥容器)에 수용(收容)된 것에 한정한다.  
③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및 동청철도(東淸鐵道)에서는, 여객은 객차(客車) 내에 실내 수조류(室內獸鳥類)를 휴대(携帶)할 수 있다. 단, 그때마다 역장(驛長)의 승인(承認)을 받고, 또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만약 동승자

3) 역자 : 러시아 중량단위의 하나, 1푼트는 409.6g

4) 역자 : 원문의 blik는 생철·양철을 말한다.

(同乘者) 중 1인(人)이라도 청구(請求)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들 수조류는 수하물차(手荷物車)로 옮겨 탑재(搭載)해야 한다. 실내 수조류를 객차 내에 휴대할 경우에는 특별임률(特別賃率)에 의거한 요금을 징수하고, 여객이 실내 수조류를 객차 내에 휴대하려는 취지(趣旨)를 기입한 영수증(領收證) 또는 특별권(特別券)을 발행한다.

④철도원(鐵道院), 조선철도(朝鮮鐵道) 및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서는 모두 수조류를 객차 내에 휴대할 수 없다.

수하물(手荷物)의 인도(引渡)

제15조

1. 수하물은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에 기재된 도착[著] 역(驛)·항(港)에서 동(同)증서와 교환(交換)하여 이것을 인도해야 한다.
2. 수하물 인도의 경우, 철도(鐵道) 또는 기선(汽船) 회사(會社)는 여객의 본인(本人) 여부(與否)를 조사[取調]할 의무(義務)가 없으며, 증서 제출자(提出者)에게 수하물을 인도하고, 그 인도 후에는 하등(何等)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여객이 수하물증서를 분실(紛失)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기선 회사는 여객에게 수취증(收取證)을 제출토록 하고, 또 수하물 수령(受領)의 권리가 있는 것에 따른 증명(證明)을 요구한다. 만약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확실한 담보(擔保)를 요구하고 수하물을 인도해야 한다.
3. ①수하물은 그 지정(指定)한 도착[著] 역(驛)·항(港)에서 이것을 인도한다.  
②여객의 희망(希望)에 따라서는 시간(時間)의 사정(事情), 세관(稅關), 세무서[收稅署] 규칙(規則), 기타(其他) 사정에서 지장(支障)이 없는 한(限) 중간(中間) 역(驛)·항(港)에서도 이것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제시[呈示]하고 수하물증서를 반납(返納)해야 한다. 단, 운임차액(運賃差額)의 반환(返還)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4. ①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및 동청철도(東淸鐵道)의 중간 역(中間驛)에서 수하물을 인도할 때는, 당해(當該) 역장(驛長)은 그 수하물증서에 「어떤 역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인장(印章)을 날인(捺印)해야 한다. 만약 수하물 전부(全部)를 인도할 경우에는, 수하물증서는 동역(同驛)에서 이것을 수령(受領)하고, 여객에 대하여는 그 수하물증서를 수령할 때마다 특별증서(特別證書)를 교부(交付)한다. 수하물의 일부(一部)를 인도할 경우에는 그 인도한 개수(箇數) 및 그 중량(重量)을 수하물증서에 기입하고 이것을 여객에게 반납(返納)해야 한다.  
②여객이 한 번 수취(受取)한 수하물을 재차 탁송(託送)하고자 할 때는 수하물증서 또는 수하물증서와 교환하여 역장(驛長)으로부터 수취(受取)한 증서를 수하물취급소(手荷物取扱所)에 제출(提出)해야 한다. 수하물취급소는 수하물증서(이전에 수취해두었거나 또는 여객이 제출한다)에 날인(捺印)된 「어떤 역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인장(印章) 밑에 발송(發送)할 열차 번호(番號) 및 그 월일(月日)을 기입한 인장을 날인하고, 이것을 여객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재차 탁송하는 수하물이 최초 탁송한 경우에 비해 그 중량(重量)에 증감(增減)이 있을 때는 다시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를 발행(發行)한다. 그 증서면(證書面)에 다시 발행한 것임을 기입해야 한다. 이 경우에 수하물의 중량이 증가하고 있을 때는 추가요금(追加料金)을 징수해야 한다.

수하물(手荷物)의 보관(保管)

제16조

·도착(到着) 철도(鐵道) 또는 기선(汽船) 회사(會社)가 규정(規定)하는 기한(期限) 내(內)에서 여객이 그 수하물을 인수(引受)하지 않을 때는 수하물 보관료(保管料)를 징수해야 한다.

수하물(手荷物)의 가격(價格) 및 그 인도기한(引渡期限)의 보장(保障)

제17조

·수하물에는 그 가격 및 인도기한의 보장을 부가(附加)하지 않는다.

수하물운송(手荷物運送)에 관한 철도(鐵道)의 책임(責任)

제18조

1. 수하물의 탁송(託送)을 접수(接受)한 철도는 도착역[著驛]에서 이것을 여객에게 인도할 때까지 그 운송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수하물 통지서(通知書)와 함께 수하물 운송의 인계(引繼)를 접수한 철도는 그 인계와 함께 운송계약(運送契約)의 당사자(當事者)가 되어 당해(當該) 계약조항(契約條項)에 의하여 운송을 해야 한다.
3. 운송계약으로 발생(發生)하는 청구권(請求權)은 철도 상호간 구상(求償)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운송을 인수(引受)한 철도, 최후에 수하물 통지서(通知書)에 의하여 수하물을 수취(受取)하는 철도 또는 그 소속선로(所屬線路) 내(內)에서 손해(損害)를 발생시킨 철도에 대해서만 소송(訴訟)에 의하여 이것을 주장(主張)할 수 있다. 청구자(請求者)는 전기(前記) 철도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 ①소송은 피고(被告)가 되어야 하는 철도본사(鐵道本社) 소재국(所在國)의 재판소(裁判所)에서 그 국(國)의 법률(法律)에 의거하여 관할권(管轄權)이 있는 자(者)에게 이것을 제기(提起)할 것을 요(要)한다. 본조(本條) 제3항(項)에서 규정(規定)하는 선택권(選擇權)은 소송의 제기(提起)에 의하여 소멸(消滅)한다.  
②본조(本條) 제3항 및 전호(前號)에 규정된 사항(事項)에 관해서는, 청구자(請求者)는 일본제국(日本帝國) 내(內)에서는 일본의 법령(法令)에 의거한다.
5. (가) ①이상 기재(記載)한 제(諸)규정에 기초(基礎)하는 수하물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의 상실(喪失)에 대하여 철도(鐵道)가 그 손해배상(損害賠償)을 해야 할 때는,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는 아래[左]에 기재(記載)하는 일정(一定) 가격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한다.

- 1등여객수하물 1「kg」당(當) 7엔(圓)
- 2등여객수하물 1「kg」당(當) 3엔(圓) 50전(錢)
- 3등여객수하물 1「kg」당(當) 2엔(圓)

②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및 동청철도(東淸鐵道)는 아래[左]에 기재(記載)하는 일정(一定) 가격(價格)에 의거하여 손해배상(損害賠償)을 한다.

- 1등여객수하물 1「kg」당(當) 7루블[留·RUB] 30코페이카[哥·Kopeck]
- 2등여객수하물 1「kg」당(當) 4루블[留·RUB] 88코페이카[哥·Kopeck]
- 3등여객수하물 1「kg」당(當) 2루블[留·RUB] 44코페이카[哥·Kopeck]

(나) 철도원(鐵道院) 및 조선철도(朝鮮鐵道)에서는, 수하물의 상실(喪失)과 관련해서는 여객 1인에 대하여 승차·선권(乘車船券)의 등급(等級)에 구애(拘碍)받지 않고 가격 100엔(圓) 이내에 한(限)해서 그 배상을 한다.

6. 수하물을 훼손(毀損)한 경우에는, 철도는 그 수하물 가격의 감소액(減少額)에 따라 배상을 한다. 단, 그 배상액은 본조(本條)에 규정된 수하물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의 상실(喪失)에 대한 배상금(賠償金)의 최고 한도(限度)를 초과할 수 없다.
7. 어떤 이유(理由)에 의하여 수하물의 인도(引渡)를 접수(接受)하지 않은 여객은 그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를 제시[呈示]하여 이것에 인도를 청구(請求)한 월일(月日) 및 시각(時刻)의 기입(記入)을 청구할 수 있다.
8. 여객이 도착역[著驛]에서 수하물을 인수(引受)하지 않을 때는, 도착철도(到着鐵道)는 그 철도에 시행(施行)하는 규칙(規則)에 기초(基礎)하여 이것을 처분(處分)한다.

분실수하물(紛失手荷物)

제19조

1. 수하물을 탑재(搭載)해야 하는 열차 또는 기선이 도착지(到着地)에 도착한 후 8일(日)을 경과(經過)해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수하물은 이것을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2. ①분실수하물을 발견(發見)했을 때는 그 소유자(所有者)의 숙소(宿所)가 분명하게 있으면 즉시 그 취지(趣旨)를 통지(通知)해야 한다.  
②이 경우에서 여객은 그 통지를 접수(接受)한 날[日]부터 30일 이내에 발견수하물(發見手荷物)을 출발[發] 역(驛)·항(港) 또는 도착[著] 역(驛)·항(港)까지 무인(無貨)으로 운송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수하물의 분실에 대하여 이전에 수령(受領)한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은 이것을 환급(還給)할 것을 요(要)한다.

수하물(手荷物)의 세관검사(稅關檢査)

제20조

①여객은 그 소유(所有) 수하물의 세관검사에 반드시 자신(自身)이 입회(立會)할 의무가 있다. 철도 또는 기선 회사는 여객이 본(本) 규칙을 준수(遵守)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여객이 그 수하물의 세관검사에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하물 유치(留置)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이의신청(異議申請)도 수리(受理)하지 않는다.

②세관검사지(稅關檢査地)는 아래[左]와 같다

- (가) 러시아세관(露國稅關) 블라디보스토크역(浦鹽斯德·Vladivostok驛), 포그라니치나야역(Pogranichnaya驛)
- (나) 청국세관(淸國稅關) 포그라니치나야역, 다렌역(大連驛), 단둥역(安東驛)
- (다) 일본세관(日本稅關) 쓰루가항(敦賀港), 모지항(門司港), 고베항(神戸港), 시모노세키항(下關港), 나가사키항(長崎港), 단둥역 및 관부연락선(關釜聯絡船) 내(內)

제2편(編) 러시아의용함대 및 오사카상선주식회사 선운송객규칙(露國御用艦隊及大阪商船株式會社船運送客規則)

1. ①전액(全額)을 지불한 승차·선권(乘車船券)을 소지(所持)하는 자(者)는 등급에 상당(相當)하는 침대(寢臺) 또는 좌석(座席)을 사용할 수 있다.  
②무임(無賃)으로 운송(運送)하는 만(滿)5세까지의 소아(小兒)는 특별히 침대 또는 좌석을 사용할 수 없다.  
③반액표(半額票)로 승선(乘船)하는 만5세부터 만10세까지의 소아는 2인이 1침대 또는 1좌석을 사용한다.
2. ①항해(航海) 중의 식료(食料)는 1등(等) 및 2등의 승차·선권(乘車船券)에 한(限)해 그 임금(賃金) 중에 포함된다.  
②3등 여객은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기선(汽船)에 한(限)해 일본식(日本食)을 받는다.
3. 선객(船客)은 항해(航海) 중 기선(汽船)이 규정(規定)한 시간에 식당(食堂)에서 일정(一定)한 식사를 받는다.
4. 식료(食料)를 지불한 선객(船客)으로서 배 멀미[船暈] 때문에 식탁(食卓)에 갈 수 없을 때는 자실(自室)에서 구운 빵과 브리온 또는 빵과 차(茶)를 받을 수 있다. 배 멀미 이외의 질병(疾病)에 걸린 선객은 선장(船長)의 의견에 따라 자실에서 식사를 받을 수 있다.
5. 검역(檢疫) 또는 위생검사(衛生檢査) 때문에 기선(汽船)의 정박(碇泊) 중에서의 식료(食料)는 기선이 부담(負擔)하는 한도(限度)에 있지 않다.
6. 전액(全額)을 지불한 승차·선권(乘車船券)을 소지하는 자(者)는 임률적용규칙(賃率適用規則)에 규정된 중량에 한(限)하여 수하물의 무임운송(無賃運送)을 받을 수 있다.
7. 선객(船客)은 그 수하물을 출발(出帆) 5시간 전(前)에 기선대리점(汽船代理店)에 제출해야 한다. 위[右]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직접 그 수하물을 기선에 적재(積載)해야 한다.
8. ①분실수하물에 대한 책임은, 오사카상선주식회사 및 러시아의용함대(露國御用艦隊)에서 분실수하물 1개(箇)에 대하여 20엔(圓) 또는 20루블[留·RUB] 이내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②수하물의 훼손(毀損)에 대하여는, 기선은 수하물 가격의 감소액(減少額)에 따라 배상한다. 단, 분실에 대한 배상금의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일본(日本)의 역(驛) 및 항(港) 출발[發] 블라디보스토크(浦羅斯德·Vladivostok) 경유(經由) 여객(旅客) 및 수하물(手荷物) 운임표(運賃表)

출발[發]·도착[著] 역(驛)	급행열차		보통열차				수하물 무		
	1 등		1 등		2 등		3 등		임제한(無 賃制限)의 5kg당(當)
	대인(大人)	소아(小兒)	대인	소아	대인	소아	대인	소아	
신바시(新橋)에서	엔(円)	엔(円)	엔(円)	엔(円)	엔(円)	엔(円)	엔(円)	엔(円)	엔(円)
만주리(滿洲里)까지	146.85	81.10	111.10	60.90	67.90	36.45	35.55	17.00	1.31
치치하얼(齊齊哈爾)까지	108.05	56.85	85.25	44.75	51.80	26.75	25.75	12.10	1.06
하얼빈(哈爾濱)까지	92.50	47.15	74.90	38.30	45.30	22.90	21.80	10.15	0.92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6.95	23.50	45.45	22.75	27.10	13.55	10.40	5.20	0.39
하바롭스크(Khabarovsk)까지	—	—	64.10	27.40	38.25	16.35	17.95	7.10	0.90
헤라누마(平沼)에서									
만주리까지	146.55	80.95	110.80	60.75	67.75	36.35	35.45	16.95	1.31
치치하얼까지	107.75	56.70	84.95	44.60	51.60	26.70	25.60	12.05	1.06
하얼빈까지	92.20	47.00	74.60	38.15	45.15	22.80	21.70	10.10	0.92
블라디보스토크까지	46.65	23.35	45.15	22.60	26.90	13.45	10.25	5.15	0.39
하바롭스크까지	—	—	63.80	27.25	38.10	16.25	17.85	7.05	0.90
쿄토(京都)에서									
만주리까지	140.85	78.05	105.55	58.10	64.60	34.80	33.35	15.90	1.16
치치하얼까지	102.00	53.85	79.70	41.95	48.45	25.10	23.55	11.00	0.91
하얼빈까지	86.50	44.15	69.35	35.50	42.00	21.25	19.60	9.05	0.77
블라디보스토크까지	40.90	20.45	39.90	19.95	23.75	11.90	8.20	4.10	0.24
하바롭스크까지	—	—	58.55	24.65	34.95	14.70	15.75	6.00	0.75
오사카(大阪)에서								*	
만주리까지	141.70	78.50	106.40	58.55	65.10	35.05	33.70	16.10	1.16
치치하얼까지	102.85	54.25	80.55	42.40	48.95	25.35	23.85	11.20	0.91
하얼빈까지	87.35	44.55	70.20	35.95	42.50	21.50	19.95	9.20	0.77
블라디보스토크까지	41.75	20.90	40.75	20.40	24.25	12.15	8.50	4.25	0.24
하바롭스크까지	—	—	59.40	25.05	35.45	14.95	16.10	6.15	0.75
고베(神戸)에서									
만주리까지	142.26	78.75	106.90	58.80	65.40	35.20	33.90	16.20	1.16
치치하얼까지	103.35	54.50	81.05	42.65	49.25	25.50	24.05	11.30	0.91
하얼빈까지	87.85	44.80	70.70	36.20	42.80	21.65	20.15	9.30	0.77
블라디보스토크까지	42.25	21.15	41.25	20.65	24.55	12.30	8.70	4.35	0.24
하바롭스크까지	—	—	59.90	25.30	35.75	15.10	16.30	6.25	0.75
시모노세키(下關) 또는 모지(門司)에서									
만주리까지	149.30	82.30	113.50	62.10	69.35	37.15	36.55	17.50	1.36
치치하얼까지	110.45	58.50	87.65	45.95	53.25	27.50	26.70	12.60	1.11
하얼빈까지	94.95	48.35	77.30	39.50	46.75	23.60	22.75	10.65	0.97
블라디보스토크까지	49.35	24.70	47.85	23.95	28.55	14.30	11.35	5.70	0.44
하바롭스크까지	—	—	66.50	28.60	39.70	17.05	18.90	7.60	0.95
나가사키(長崎)에서									
만주리까지	154.55	84.90	120.25	65.45	74.45	39.70	38.30	18.40	1.09
치치하얼까지	115.70	60.70	94.40	49.30	58.30	30.05	28.50	13.50	0.84
하얼빈까지	100.20	51.00	84.05	42.85	51.90	26.15	24.55	11.50	0.70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4.60	27.30	54.60	27.30	33.60	16.80	13.15	6.60	0.17
하바롭스크까지	—	—	73.25	32.00	44.80	19.60	20.70	8.45	0.68
쓰루가(敦賀)에서									
만주리까지	136.95	76.10	102.65	56.65	62.85	33.90	32.20	15.35	1.01
치치하얼까지	98.10	51.90	76.80	40.50	46.70	24.25	22.35	10.45	0.76
하얼빈까지	82.60	42.20	66.45	34.05	40.25	20.35	18.45	8.45	0.62
블라디보스토크까지	37.00	18.50	37.00	18.50	22.00	11.00	7.00	3.50	0.09
하바롭스크까지	—	—	53.65	23.20	33.20	13.80	14.60	5.40	0.60

- ① 철도원(鐵道院)에서는, 침대(寢臺)에 대한 추가요금(追加料金)은 그 임률규칙(賃率規則)에 이것을 규정한다.
- ② 동청(東淸) 및 우수리(烏蘇里[Ussuri]) 철도에서는, 급행열차로 여행하는 여객은 만국침대차회사(萬國寢臺車會社)의 임률규칙(賃率規則)에 의거하여 좌석(座席) 및 침대료(寢臺料)를 지불할 것을 요(要)한다.
- ③ \* 이하는(역차 보충) 기선(汽船)에 의(依)한다.

일본(日本)의 역(驛) 및 항(港) 출발[發] 다련(大連) 경유(經由) 여객(旅客) 및 수하물(手荷物) 운임표(運賃表)

출발[發]·도착[著] 역(驛)	급행열차		보통열차				수하물 무		
	1 등		1 등		2 등		3 등		임제한(無 賃制限)의 5kg당(當)
	대인(大人)	소아(小兒)	대인	소아	대인	소아	대인	소아	
신바시(新橋)에서	엔(円)	엔(円)	엔(円)	엔(円)	엔(円)	엔(円)	엔(円)	엔(円)	엔(円)
만주리(滿洲里)까지	152.30	84.95	124.40	68.10	70.15	37.95	41.45	20.80	1.42
치치하얼(齊齊哈爾)까지	112.90	60.35	98.15	51.70	53.75	28.15	31.65	15.90	1.98
하얼빈(哈爾濱)까지	97.40	50.55	87.85	45.15	47.20	24.20	27.70	13.90	1.92
헤라누마(平沼)에서									
만주리까지	152.00	84.80	124.10	67.95	69.95	37.90	41.35	20.70	1.42
치치하얼까지	112.60	60.20	97.85	51.55	53.55	28.05	31.55	15.85	1.98
하얼빈까지	97.10	50.40	87.55	45.00	47.00	24.15	27.60	13.85	0.92
쿄토(京都)에서									
만주리까지	146.55	82.05	118.65	65.20	66.70	36.25	39.15	19.65	1.32
치치하얼까지	107.15	57.50	92.40	48.85	50.30	26.45	29.35	14.75	0.98
하얼빈까지	91.65	47.65	82.10	42.25	43.75	22.50	25.40	12.75	0.82
오사카(大阪)에서									
만주리까지	146.10	81.85	118.20	65.00	66.40	36.10	39.00	19.55	1.32
치치하얼까지	106.70	57.25	91.95	48.60	50.05	26.30	29.15	14.65	0.98
하얼빈까지	91.20	47.45	81.65	42.05	43.45	22.35	25.25	12.65	0.82
고베(神戸)에서									
만주리까지	145.70	81.65	117.85	64.80	66.20	36.00	38.85	19.45	1.32
치치하얼까지	106.35	57.05	91.60	48.40	49.80	26.20	29.00	14.60	0.98
하얼빈까지	90.80	47.25	81.25	41.85	43.25	22.25	25.10	12.60	0.82
시모노세키(下關) 또는 모지(門司)에서									
만주리까지	135.50	76.55	109.15	60.45	60.95	23.40	35.35	17.70	1.02
치치하얼까지	96.15	51.95	82.90	44.05	44.60	23.55	25.55	12.85	0.68
하얼빈까지	80.60	42.15	72.55	37.50	38.00	19.65	21.60	10.85	0.52
나가사키(長崎)에서									
만주리까지	140.80	79.20	114.45	63.10	64.15	34.95	37.45	18.80	1.22
치치하얼까지	101.45	54.60	88.20	46.70	47.75	25.15	27.65	13.90	0.88
하얼빈까지	85.90	44.80	77.85	40.15	41.20	21.20	23.70	11.90	0.72

- ① 철도원(鐵道院)에서는, 침대(寢臺)에 대한 추가요금은 그 임률규칙(賃率規則)에 이것을 규정한다.
- ②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서는, 침대(寢臺)에 대한 추가요금은 대인·소아 모두 5엔(圓)으로 한다.
- ③ 동청(東淸) 및 우수리(烏蘇里[Ussuri]) 철도에서는, 급행열차로 여행하는 여객은 만국침대차회사의 임률규칙에 의거하여 좌석 및 침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要)한다.

일본(日本)의 역(驛) 및 항(港) 출발[發] 조선(朝鮮) 경유(經由) 여객(旅客) 및 수하물(手荷物) 운임표(運賃表)

출발[發]·도착[著] 역(驛)	급행열차		보통열차						수하물 무제한(無賃制限)의 5kg당(當)	
	1 등		2 등		3 등					
	대인(大人)	소아(小兒)	대인	소아	대인	소아	대인	소아		
신바시(新橋)에서	만주리(滿洲里)까지	엔(円) 152.30	엔(円) 84.95	엔(円) 122.90	엔(円) 67.30	엔(円) 70.15	엔(円) 37.95	엔(円) 41.45	엔(円) 20.80	엔(円) 1.78
	치치하얼까지	112.90	60.35	96.65	50.95	53.75	28.15	31.65	15.90	1.44
	하얼빈까지	97.40	50.55	86.36	44.40	47.20	24.20	27.70	13.90	1.28
	하리누마(平沼)에서	만주리까지	152.00	84.80	122.60	67.15	69.95	37.90	41.35	20.70
교토(京都)에서	치치하얼까지	112.60	60.20	96.35	50.80	53.55	28.05	31.55	15.85	1.44
	하얼빈까지	97.10	50.40	86.05	44.25	47.00	24.15	27.60	13.85	1.28
	만주리까지	146.55	82.05	117.15	64.45	66.70	36.25	39.15	19.65	1.73
오사카(大阪)에서	치치하얼까지	107.15	57.50	90.90	48.05	50.30	26.45	29.35	14.75	1.39
	하얼빈까지	91.65	47.65	80.60	41.50	43.75	22.50	25.40	12.75	1.23
	만주리까지	146.10	81.85	116.70	64.20	66.40	36.10	39.00	19.55	1.73
교베(神戸)에서	치치하얼까지	106.70	57.25	90.45	47.85	50.05	26.30	29.15	14.65	1.39
	하얼빈까지	91.20	47.45	80.15	41.30	43.45	22.35	25.25	12.65	1.23
	만주리까지	145.70	81.65	116.35	64.05	66.20	36.00	38.85	19.45	1.68
시모노세키(下關) 또는 모지(門司)에서	치치하얼까지	106.35	57.05	90.10	47.65	49.80	26.20	29.00	14.60	1.34
	하얼빈까지	90.80	47.25	79.75	41.10	43.25	22.25	25.10	12.60	1.18
	만주리까지	135.50	76.55	107.65	59.70	60.95	33.40	35.35	17.70	1.53
나가사키(長崎)에서	치치하얼까지	96.15	51.95	81.40	43.30	44.60	23.55	25.55	12.85	1.19
	하얼빈까지	80.60	42.15	71.05	36.75	38.00	19.65	21.60	10.85	1.03
	만주리까지	140.80	79.20	112.95	62.35	64.15	34.95	37.45	18.80	1.63
나가사키(長崎)에서	치치하얼까지	101.45	54.60	86.70	45.95	47.75	25.15	27.65	13.90	1.29
	하얼빈까지	85.90	44.80	76.35	39.40	41.20	21.20	23.70	11.90	1.13

① 철도원(鐵道院), 조선철도(朝鮮鐵道) 및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서는, 침대에 대한 추가 요금은 그 임률규칙(賃率規則)에 이것을 규정한다.

② 동청(東淸) 및 우수리(烏蘇里[Ussuri]) 철도에서는, 급행열차로 여행하는 여객은 만국침대차회사의 임률규칙(賃率規則)에 의거하여 좌석 및 침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한다.

\*역자: 표 중 나가사키에서 치치하얼까지 보통열차 3등 소아 운임은 원문에는 31.90으로 되어 있지만, 13.90의 잘못이기 때문에 수정했다.

조선철도(朝鮮鐵道)의 역(驛) 출발[發] 여객(旅客) 및 수하물(手荷物) 운임표(運賃表)

출발[發]·도착[著] 역(驛)	급행열차		보통열차						수하물 무제한(無賃制限)의 5kg당(當)	
	1 등		2 등		3 등					
	대인(大人)	소아(小兒)	대인	소아	대인	소아	대인	소아		
부선(釜山)에서	만주리(滿洲里)까지	엔(円) 126.00	엔(円) 71.80	엔(円) 97.65	엔(円) 54.70	엔(円) 59.30	엔(円) 32.55	엔(円) 35.35	엔(円) 17.70	엔(円) 1.33
	치치하얼(Qiqihar)까지	86.65	47.20	71.40	38.30	42.90	22.75	25.55	12.80	0.99
	하얼빈(哈爾濱)까지	71.10	37.40	61.05	31.75	36.35	18.80	21.60	10.85	0.83
	하바로프스크(Хабаровск)까지	—	—	101.85	50.20	61.45	29.85	37.40	16.85	1.67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까지	117.10	61.30	90.75	47.45	54.80	28.20	32.95	15.70	1.31
남대문(南大門)에서	만주리까지	112.50	65.05	84.15	47.95	49.85	27.80	30.20	15.15	1.23
	치치하얼까지	73.15	40.45	57.90	31.55	33.45	18.00	20.40	10.25	0.89
	하얼빈까지	57.60	30.65	47.55	25.00	26.90	14.05	16.45	8.25	0.73
	하바로프스크까지	—	—	88.35	43.45	52.00	25.15	32.25	14.25	1.57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03.60	54.55	77.25	40.70	45.35	23.50	27.85	13.15	1.21
평양(平壤)에서	만주리까지	104.25	60.90	75.90	43.80	44.05	24.95	26.90	13.50	1.13
	치치하얼까지	64.90	36.35	49.65	27.45	27.70	15.10	17.10	8.60	0.79
	하얼빈까지	49.35	26.50	39.30	20.85	21.10	11.20	13.15	6.60	0.63
	하바로프스크까지	—	—	80.10	39.35	46.20	22.25	28.95	12.60	1.47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5.35	50.45	69.00	36.60	39.55	20.60	24.55	11.50	1.11

① 조선철도(朝鮮鐵道) 및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서는 침대에 대한 추가요금은 그 임률규칙(賃率規則)에 이것을 규정한다.

② 동청(東淸) 및 우수리(烏蘇里[Ussuri]) 철도에서는, 급행열차로 여행하는 여객은 만국침대차회사의 임률규칙(賃率規則)에 의거하여 좌석 및 침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要)한다.